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7. 1. 26.(목) 09:34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4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1월 11일에 있었던 제2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1월 24일에 있었던 제3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5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재)CBS (2017-04-02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 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재)CBS의 FM방송국 신규허가 신청에 따라 관련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를 말씀드리면 ‘16년 2월 4일 CBS에서 방통위에 대구음악FM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6년 6월 30일 미래부는 기술심사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16년 12월 6일 방통위에서 CBS에 허가신청서상 미비사항을 보정요청한 것에 대해 ‘16년 12월 20일 CBS에서 방통위에 보정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신규허가 신청 내용은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방송구역을 대구광역시(일원), 성주군을 일부로 하는 음악FM방송국의 허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신규허가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신규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라디오 신규허가 심사임을 고려하여 방송편성 및 지역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8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위촉 기준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자,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인 자입니다. 결격사유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한 자,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의 자문 또는 용역을 수행한 자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입니다.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은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고, 심사위원회 주요 임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 결정,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 평가, 필요시 신청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은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기독교 복음 전파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 FM라디오 방송국이 개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신규 방송국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심사항목의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표> 밑에 참고표시를 보시면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15년 4월 '극동여수FM 및 '16년 6월에 극동제주표준FM·국악대전FM 신규허가 기본계획' 의결시 채택한 배점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여부 결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인에 대해서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을 획득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 또는 '허가 거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규허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1월 말부터 청취자 의견 접수를 시작하고 2월 중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한 뒤에 3월 중에 심사결과를 의결하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명확히 할 부분이 허가 여부 결정에 있어서 여기에서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라는 것은 앞에 심사항목 <1>번부터 <7>번까지 그것을 각각 한 항목으로 봐서 그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오늘은 심사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보고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보고가 안 되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기본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관련 내용들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여부들을 따져서 그다음에 사업허가 여부를 다시 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음악만을 방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복음 전파, 종교목적의 음악방송이기 때문에 종교음악, 기독교 관련 음악의 편성비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 CBS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7:3 정도로 70%가 기독교음악, 30%가 일반음악을 방송하는 것으로 현재 편성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자율적으로 제시한 계획서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예를 들어 기독교 관련 음악을 70% 이상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렇게 따로 규정은 없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자율적으로...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음악 장르로 한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악 범위 내에서는 기독교를 하든 비기독교를 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제시할 때는 기독교방송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기독교음악을 많이 편성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어쨌든 특수목적의 종교방송인데 그렇다면 음악도 종교성을 띠는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방송을 해야 할 것 같다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인데 규정은 우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방송 사항을 정할 때 보통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방송 사항을 하게 됩니다. 전문편성인 경우에는 방송사업자가 보통 방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는데 CBS 같은 경우 '음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앞으로 광고 문제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광고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FM방송이 청취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AM방송이나 표준 FM보다도 서울 같은 경우는 클래식음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청취율이 높는데 광고를 하게 되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다른 라디오 경쟁사업자들의 광고시장 잠식에 따른 우려도 있고 반발도 있을 텐데 민원은 혹시 접수받아 본 적 있습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아직 공개는 안 되어 있고 시청자 의견청취를 하면서 관련 내용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 방송법에 따르면 경쟁사업자에게 입장을 듣는 절차는 따로 공식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전 사례를 살펴보면 청취자 의견조사할 때 같이 제출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다만, 광고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방송법에서 규제하는 사항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심사사항에 광고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실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될 때 같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CBS는 미디어랩 같은 광고랩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지 않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KOBACO...

○ 김석진 상임위원

- KOBACO에서 광고영업을 같이 해 주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아무래도 배당 문제가 음악FM이 하나 늘어나니까 함께 묶여 있는 결합판매 혜택을 누리는 다른 사업자들 반발도 있을 텐데 그것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유사 보도입니다. CBS 같은 경우 당초 설립 목적, 또 우리가 허가해 주는 취지에 맞지 않게 공공연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논평, 해설 이것까지 상당한 비중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립 목적에 맞지도 않고 또 우리가 허가해 줄 때 그 조건에 분명히 보도는 제외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이번에 음악FM이 하나 허가되면 이런 점을 분명하게 적시해서 허가조건에 아주 명확하게 그것이 붙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사항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 편성표상에는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이 전혀 없고 음악 프로그램만 편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음악전문으로 하는데 혹시 다른 시사나 이런 것들이 만약 들어간다면 그것은 사업계획서가 달라지고 또 저희 허가 취지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확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보도행위는 그야말로 여론형성과 여론조성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또 차지하기 때문에 잘 훈련되고 또 책임 있는 보도행위가 훈련된 방송인으로 하여금 잘 정제돼서 보도가 다듬어져서 나가야지, 그런 데 대한 정제되지 않은 보도가 무책임하게 나가면 안 될 것입니다.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보도하게 되면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허가증에 붙어 있지도 않은 보도를 사실상 묵인 내지 방조하게 되면 무책임하게 방송할 경우에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에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을 합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전체적으로 CBS 대구음악FM 신규허가 기본계획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여타 신규허가 기본 계획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논의가 됐으니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음악FM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규허가를 내주는 것이고,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CBS 표준FM 그 사안인데, 하나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동안 제가 찾아봤지만 CBS가 최초 허가를 받고 방송을 낼 때가 1954년입니다. 이때는 종합편성방송으로서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했습니다. 개국 당시의 편성비율을 보면 음악프로그램이 42% 정도 되고 종교프로그램이 25%, 교양이 16%, 뉴스와 공지가 9%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종편으로 CBS표준방송이 시작됐는데 언제 보도 기능이 없어졌냐 하면 국장님, 아십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5공화국 들어서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언론 통폐합 때 종교방송이 자꾸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니까 당시 군사정권에서 언론 통폐합을 시키면서 보도기능을 빼앗아 버렸고, CBS의 종사자 130명 정도의 직원들을 KBS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일부 CBS가 보도기능을 다시 되살려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CBS의 보도기능에 대해서는 증권PP나 경제PP들의 유사보도와는 달리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과거 군사정권의 아픈 기억들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CBS 표준FM의 보도기능에 대해서 현재는 일정 정도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넘어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여타 PP들의 유사보도와 동일한 선상에서 규제하자, 이것보다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이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이 되지, CBS가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방송으로서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서 여타 증권방송에서 하고 있는 유사 보도와 동일선상에 놓고 제도를 개선하자, 이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겠지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CBS 음악FM 관련해서 심사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번진 것 같습니다. 표준FM 부분의 문제는 그것은 이것과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논쟁은 아닙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간단하게 하시지요. 이것은 이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어서...

○ 김석진 상임위원

- 오해를 받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덧붙입니다. CBS 역사적인 연원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아픈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로서 지금 CBS가 유사 보도 행위가 있고 또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고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앞으로 이렇게 방송국을 신규 허가할 때 보도기능을 예를 들어서 허용한다면 엄격한 잣대를 통해서 아예 양성화시켜서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건전하게 여론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특정 CBS 유사 보도 행위를 다른 매체와의 동일선상에서 놓고 그렇게 격하시켜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CBS에 대한 그런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나중에 관련 방송사의 재허가 등을 논의할 때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구음악FM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간단한 의견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주 마이너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5페이지의 심사항목과 배점 밑에 참고표시로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에 극동여수FM 신규허가 기본계획 의결시 채택한 배점방식을 적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말이 필요한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방통위의 여러 정책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나 또 현행 법·제도에 따라서 집행하는 행정사항들에 대해 자꾸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말들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웬지 기계적인 일관성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요즘처럼 시장환경이나 정책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자꾸 일관성을 강조한다는 것이 저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과거의 사례와 달리 할 필요가 없으면 과거의 허가 기본계획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적용했다면 되지, 그 앞에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저는 심사의 일관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일관성보다 예를 들어서 상황의 변화라든지 개선의 필요성이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면 일관성보다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바뀌어야겠지만 특별하게 상황변화가 없을 때, 고려할 다른 요소가 없을 때는 심사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이야기는 과거의 사례대로 심사항목별 배점을 한다, 그냥 하면 되지 굳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말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렇게 정리하지요.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라는 표현이 있으면 항상 모든 경우에 심사의 일관성이 제1의 목표인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이 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를 빼고 극동여수, 극동제주표준, 국악대전 신규허가 기본계획 의결시 채택한 배점방식과 같은 방식을 적용'이라든지 그 정도 과거에 했던 것과 같이 한다는 것만 남겨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그것 가지고 큰 논쟁거리가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5페이지의 허가여부 결정이 중요한 것인데 총점 650점 이상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항목 40% 미달하면 조건을 부가해서 허가를 주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조건부 허가, 특정 항목이 40%를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허가 거부는 여기에 없어서, 허가 거부는 아니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재승인·재허가 심사에서 과락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없지요? 다른 심사에서….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과락제는 종편 쪽과 PP쪽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종편심사 쪽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반드시 과락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할 수 있다'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겠네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지상파는 다르게 과락제는 없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CBS는 다들 나름대로 평가하실 것이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것

을 보면서 생각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법 몇 가지 개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 알려드릴 필요도 있는 것이 홈쇼핑도 이제는 시청자위원회를 두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토론과정에서 이것을 둘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방송은 시청자가 제일 중요한 이해관계자이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랬는데 반대하는 의원들께서는 “이것은 상품 선전 광고 유통인데 그러느냐?” 그러시는데 “상품광고와 유통을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교육을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교육방송이고, 상품유통을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홈쇼핑이기 때문에 똑같이 시청자위원회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렇게 중요하다면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위반하고 잘 운영하지 않으면 재승인·재허가 심사에서 탈락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비슷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여러 개의 심사항목이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서 낙제점수를 받아도 총점으로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 그랬습니다. 저는 그 점을 매우 아쉬워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CBS 대구FM방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CBS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책 규제당국이 우리가 봤을 때 정책적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공정성 실현 이것이 중요하다,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항목에서 40%에 미달하면 과락으로 허가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서 40% 미만이 되더라도 총점으로 650점 넘으면 조건을 조금 붙이든가 해서 통과시켜왔기 때문에 이것이 적극적인 정책 구현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직접 관련은 아닐지 모르지만 심사계획을 보고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송사업자에 따라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심사항목의 점수가 배점의 40% 또는 50%에 미달한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한 경우도 방송사업자에 따라서는 있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방송사업자의 종류에 따라서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CBS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아닙니다. 관련해서 CBS가 특별히 문제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그다음에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런 것들과 아까 말씀드린 방송의 공적책임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이 똑같은 비중이나, 물론 채점 점수 배점은 다르지만, 나중에 총점에서 똑같이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송의 허가, 허가 거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항목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들이 합의를 해야겠지요. 예를 들면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이 주가 되어서 허가나 허가 거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종편 심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사전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종편에 대한 세부 심사계획을 보고드리고 의결한 내용에는 그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오늘 이 안건과 직접 관련은 없을지 모르지만 심사 전반적인 내용이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지금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이 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것을 삭제하고 표현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tbs-eFM의 다국어방송 편성비율 변경 승인에 관한 건 (2017-04-023)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tbs-eFM의 다국어방송 편성비율 변경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tbs-eFM의 중국어방송 추가편성에 따른 다국어방송 편성비율 변경을 승인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tbs-eFM의 다국어방송 편성비율 변경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13년 9월 방통위에서는 tbs-eFM에 대해 다국어방송 편성할 수 있도록 방송사항을 변경 승인한바 있습니다. '13년 10월부터 이에 따라서 tbs-eFM에서 중국어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16년 5월부터 10월까지 tbs-eFM은 중국어방송 확대 관련 사전조사 및 간담회를 통해 중국인 거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17년 1월 다국어방송 편성비율 변경 승인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중국어방송 편성비율을 8.3%(일 2시간)에서 16.7%(일 4시간)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의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별 다국어방송의 수요를 고려하여 방송사항을 다국어방송으로 변경한 위원회 의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승인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당구장 표시 보시면 지금 tbs-eFM의 방송구역이 서울(일원), 인천(일부), 경기도(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등록중국인은 총 41만 6,000명으로 전체 등록외국인 70만 4,000명 중 5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1월 중으로 변경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7-04-030)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먼저 의결주문은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개요는 관리자 ID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고 부산과 전북지방경찰청이 통보한 아래의 <표>의 10개 사업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첫째, 티코디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 받은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2,959건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 위반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일동후디스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처리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결제대행사 등 84개 업체에 처리위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티코디 등 7개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암호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먼저 시정명령은 7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교육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태료는 아래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업규모 등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위반 관련해서 티코디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인 1,000만원을 적용하되, 특별히 가중·감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1,0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고지 위반 관련해서 일동후디스는 지난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인 600만원을 적용하되, 특별히 가중·감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6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관련해서 7개 사업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인 1,000만원을 적용하되, 티코디는 50%를 가중해서

1,500만원, 일동후디스는 50%를 가중하여 1,5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이엔에스글로벌과 창업114는 기준금액인 1,000만원, 새싹론대부와 3H캐피탈대부중개는 50%를 감경하여 500만원을 부과하고 스카이캐피탈대부중개는 위반행위가 1개이고 소상공인 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시정명령만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하나만 여쭙 보면 조사배경이 관리자 ID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고 부산·전북지방경찰청이 통보한 사업자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경찰조사에 의하면 혹시 관리자 ID와 비밀번호가 어떤 경위로 유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도 밝혀졌습니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어떤 경유로 유출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경찰 쪽에서 개인정보 판매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관리자 ID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해커를 검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DB도 확보를 못해서 저희 쪽에 유출된 사업자 목록만 통보해 줬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관리자 ID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도 조사한 결과 밝힌 것이 없고, 그다음에 저희로서도 조사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은 없습니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갈수록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해서 주로 경찰청에서 수사하다가 저희에게 통보해 오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이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이번처럼 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일선 경찰서에서 바로 오는 것도 있습니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찰청 본청에서 총괄 지휘하는 데가 사이버안전국이지요?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방통위와 경찰청 본청의 사이버안전국과 인터넷진흥원 이렇게 3자간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규정 위반사건, 경찰은 형사처벌 가능성 때문에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행정처분 대상일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기관 간의 협조도 원활하게 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고 정보공유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경찰이 지방 조직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각급 지방청이나 일선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는 과정에서 매뉴얼처럼 프로세스가 일정하게 균일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또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해도도 다를 수도 있어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경찰청 본청과 우리 방통위 이용자정책국과 인터넷진흥원 3개 기관 간에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규정 위반, 법규 위반에 관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3개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원활한 협조 내지는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것이 나중에 MOU 형태로 꼭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경찰청에서 일선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로 시달되어서 저희와 일을 잘할 수 있는 체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조만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계속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끼리 워크숍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당초 경찰도 1개 팀 정도였다가 지금 전국적으로 사이버수사대원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좋은 의견 주셨는데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먼저 보고사유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제고하고 기타 보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과징금 부과·납부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아래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서면고지의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과징금 산정 시 현재는 필수적 가중만 있으므로 필수적 감경을 신설하되,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동일한 범위인 50%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조사·거부 방해와 관련해서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에는 법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법률상 상한인 5,000만원의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3>번의 <별표 3> 구분에 보면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통신사업자 외의 자’,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이런 표현인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해석됩니다만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기 위해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대리점, 판매점들과 그다음에 대규모대리점, 판매점 또 이동통신사업자를 구분해서 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액수에 큰 차이를 두겠다는 취지인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처장님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고안건을 보면 결국 단말기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과징금 산정 내지 부과할 때 필수적 가중 내지는 감경 이런 제도가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과태료 부과 처분함에 있어서도 좀 더 합리적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통위가 관장하는 법 중에 방송법도 있고 IPTV법도 있고 지금 이 3개 법도 있고 기타 등등 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공통된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징금 제도, 과태료 부과 제도, 또 금지행위제도, 그런데 1개국에 있어서 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을 같이 보니까 '아, 이 법에 이런 것이 미흡하거나 아니면 보완이 안 되어 있거나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는데 방통위 전체 검토를 주기적으로 해서 법 간의, 공통된 제도 간의 정합성도 유지하고 한 쪽에서 보완됐으면 다른 쪽도 분명히 보완 필요성이 있으면 같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이 다르다 보면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획조정관실에서는 우리 법별로 공통된 제도도 제가 예시적으로 이야기한 금지행위, 과징금 제도, 과태료 제도 등 이런 것들을 한번 쪽 리뷰를 해서 정비할 때 같이 시기적절하게 정비해 나가는 역할이 전체적으로 있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종기 사무처장

-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장 자체가 방송통신 융합으로도 가고 새로운 서비스도 나오는 그런 변화된 모습 때문에 과거 개별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특히 제재 관련 규정들은 시장에서 예측 가능성이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합성을 확보해 가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조정관실 중심으로 해서 관련 법령들을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일괄해서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든지 아무튼 그 부분은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인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을 횡수 위반에 관계없이 무조건 5,00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여기에서 말하는 대규모유통업자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현행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규정만 따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 문현석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매장면적이 3,000㎡ 이상,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전체 유통업자가 얼마나 되지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문현석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매장 기준으로 할 때 15%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15%가 대규모유통업자입니까?
- 문현석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입법예고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의결을 나중에 다시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입법예고는 그대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3>번의 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를 순서를 바꿔서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는 5,000만원 이것을 먼저 위에 쓰고 그다음에 '그 이외의 자' 그래서 거기는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1,500만원 이렇게 쓰는 것이 누구든지 법을 봤을 때 이해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지금 입법예고할 때는 관계없는데 나중에 최종 의결할 때, 아니면 입법예고할 때 바꿀 수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입법예고할 때 바꿔서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입법예고할 때 그렇게 바뀌서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경하는 것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2월 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7년 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2분 폐회 】